

2022년 대구시와 함께하는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안내서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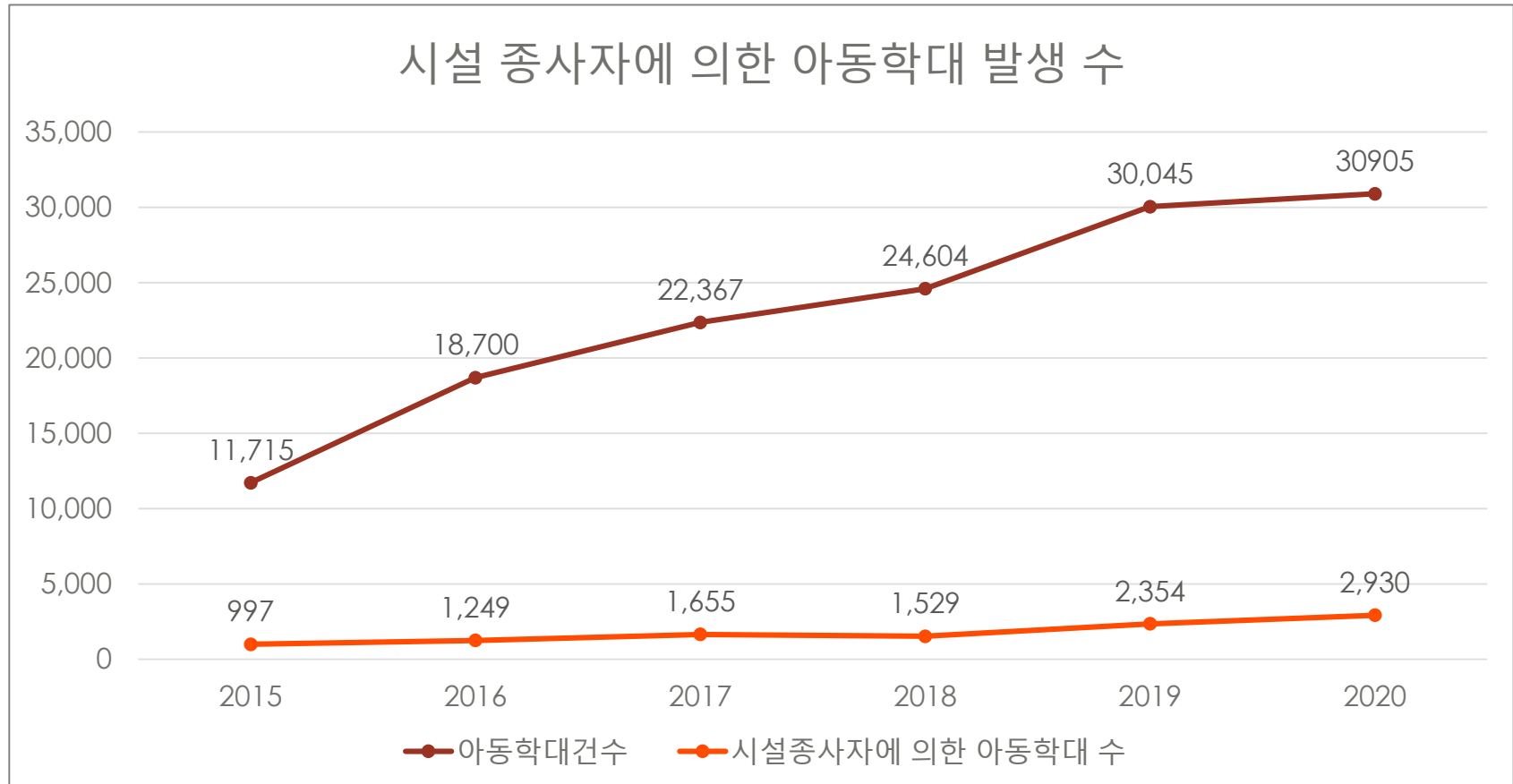
1) 아동에 대한 위해 요인 지속적 증가

2) 안전보호에 대한 기관 차원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안전보호정책 실시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 아동에 대한 위해 요인 지속적 증가



## "수업 진도 못 따라와..." 3~4살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등록 2020.12.23 11:01 / 수정 2020.12.23 11:09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늘(23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A씨가 3~4세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이달 초 교실 내 CCTV에 찍혔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우는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겨있다.

한 어린이는 충격으로 인해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동 7명에게 폭행을 하거나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어제(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했다"며 "수업 시간에 교사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지진 복지시설 원장 징역 3년

송고시간 | 2020-02-07 15:38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신체 일부를 지진 대전 한 복지시설 원장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기충격기로 발달장애 아동 2명의 신체 일부를 폭행하고, 다른 아동들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 등에서 발견된 일정한 간격의 빨간 점을 전기충격기로 지진 상처로 봤다.

'A씨가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전기충격기 소리가 들렸다'는 시설 관계자 진술도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들이 가장 안심하고 생활해야 할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범행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 안전보호에 대한 기관 차원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

부모를 제외한 대리양육자인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돌봄 시설은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등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개인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 규약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안전보호정책 실시

세이브더칠드런은 그 간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사업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이 기관 자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도록 <아동안전보호정책>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특히, 기존의 종사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관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아동안전보호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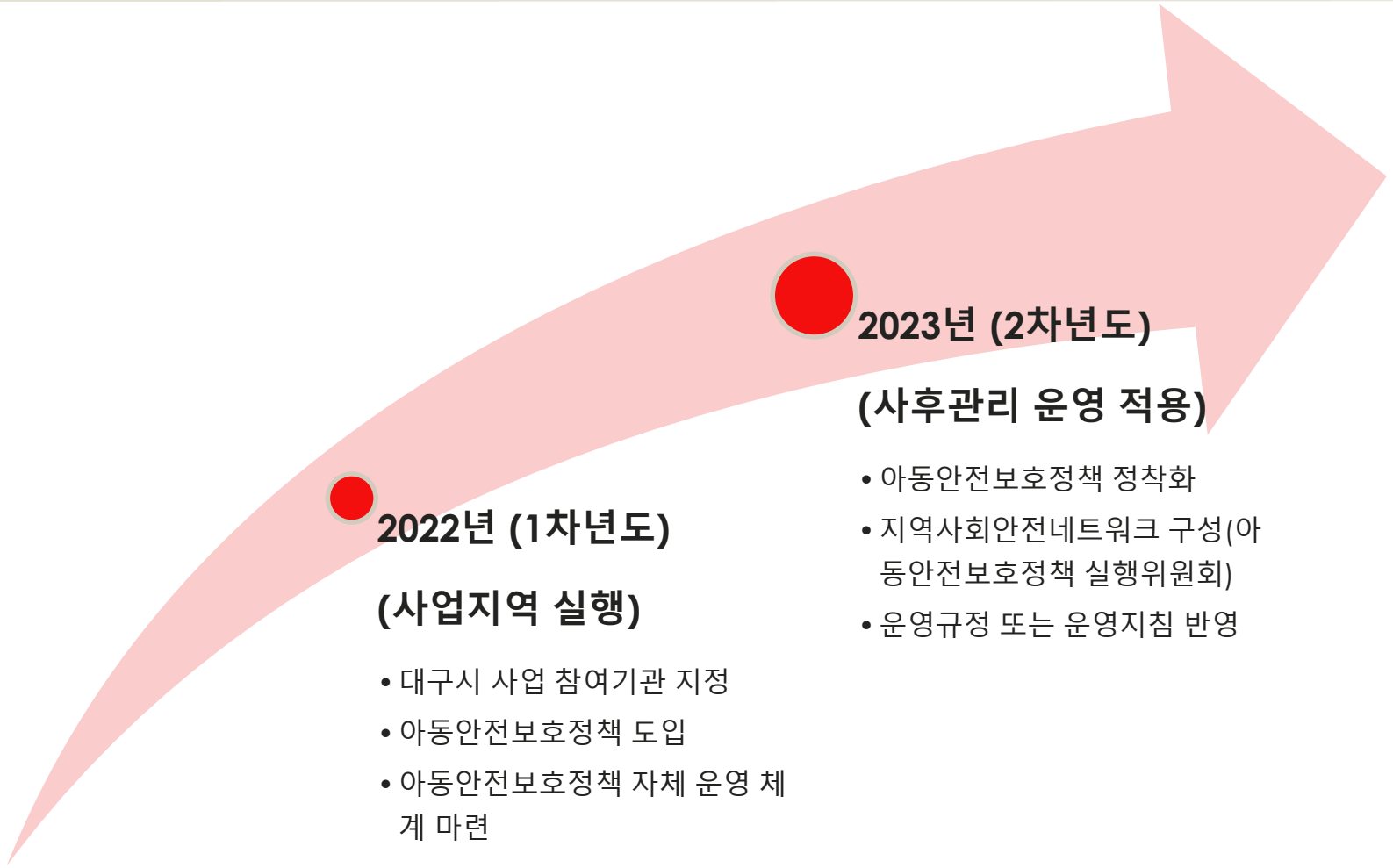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아동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를 갖추어,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

#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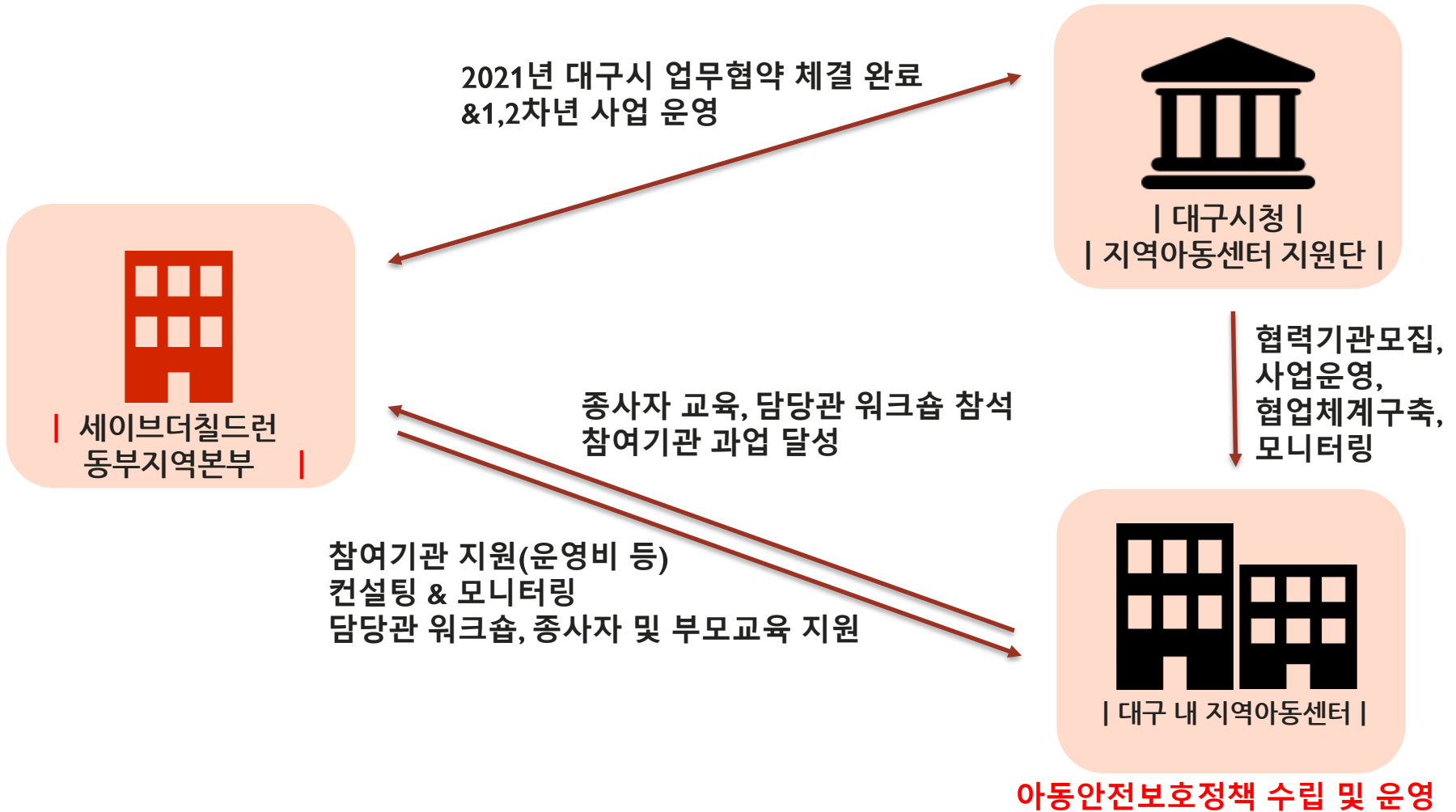
**2022년 (1차년도)**  
**(사업지역 실행)**

- 대구시 사업 참여기관 지정
- 아동안전보호정책 도입
- 아동안전보호정책 자체 운영 체계 마련

**2023년 (2차년도)**  
**(사후관리 운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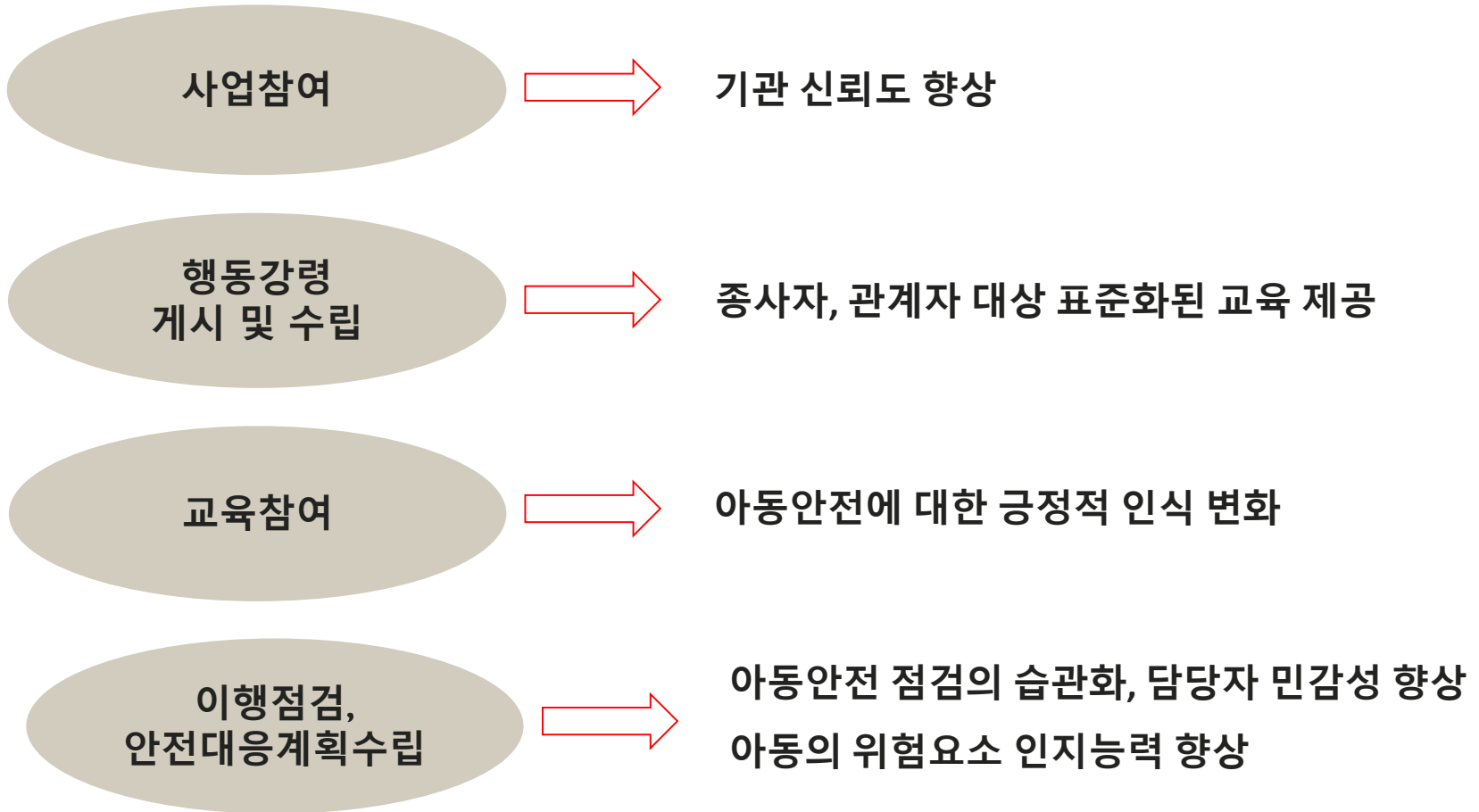
- 아동안전보호정책 정착화
- 지역사회안전네트워크 구성(아동안전보호정책 실행위원회)
- 운영규정 또는 운영지침 반영

# 사업구조





# 사업 참여기관 피드백



#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참여 이점

- 1. 아동안전보호 체계 마련 및 컨설팅 제공
- 2. 담당관 워크숍 및 직원, 보호자 등 대상 교육 지원
- 3. 사업참여기관 인증  
: 기관 현판, 담당자 및 아동 배지 제작
- 4.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게시물, 리플릿 제작



[담당자용]



[아동용]

#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참여 이점

---

5. 센터내 담당관 수당(5만원) 및 기관 운영비(10만원) 지원

: 1차년도 월 15만원 지원(22년 3~12월)

6. 직원과 기관의 평판 보호

# 사업내용 – 1,2차년도 사업 내용

## 2022년 1차년도

- 담당관 지정
-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
- 행동강령 제작
- 보고/대응 체계 표 마련
- 중간/ 결과보고
- 아동참여활동 진행
- 담당관 워크숍 참가
- 운영비 / 담당관 활동비 지원

## 2023년 2차년도

- 실행위원회 정기회의
-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점검
- 아동안전보호정책 운영규정 마련
- 보고/대응 프로세스 보완
- 기관 리플렛 제공
- 니즈에 맞는 특강 및 스터디 제공

# 사업내용 – 아동안전보호정책 단계

---

4. 대응 Responding

3. 보고 Reporting

---

2. 예방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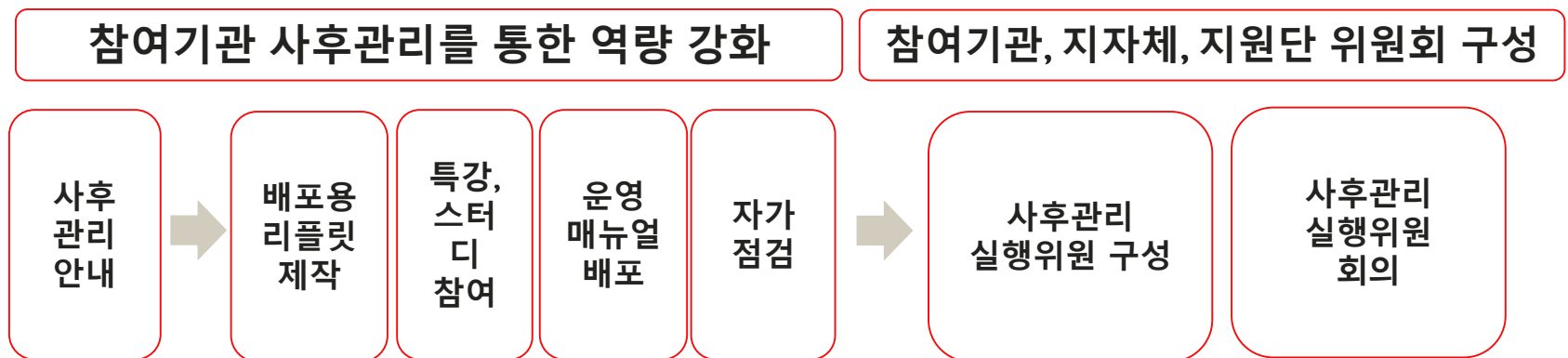
1. 인식 Awareness

# 사업내용 – 아동안전보호정책 단계 세부내용

## 1 차년도



## 2 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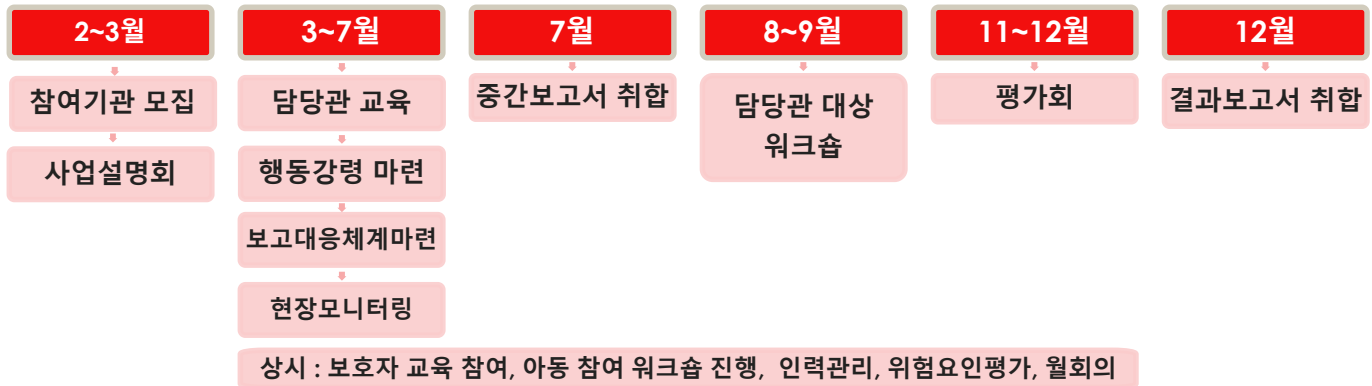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위험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보고하여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 혹은 동일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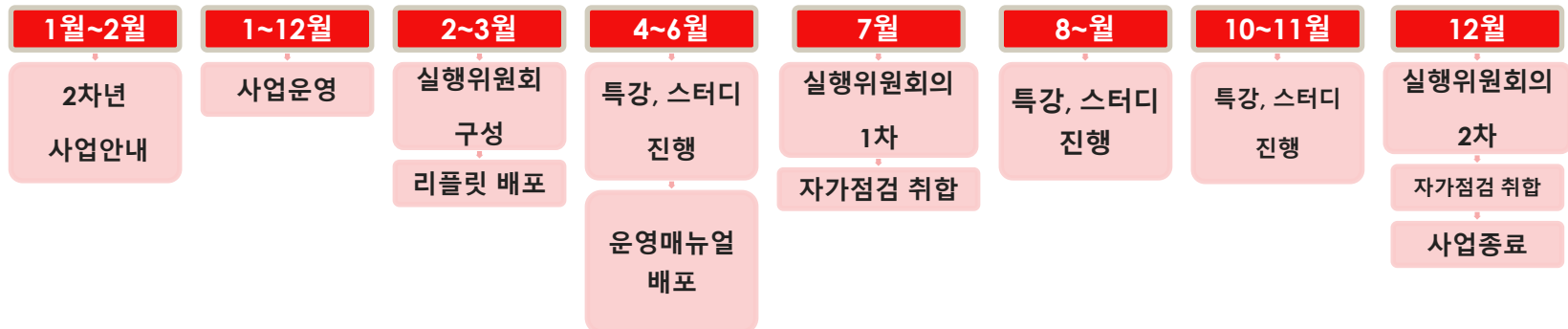


#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22년 1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2년 사업 운영 내용(3~12월 사업 진행)

월	내용
3월	- 센터별 담당자 지정
3~6월	- 연 1회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 매뉴얼 교육 참가 - 연 1회 센터 내 종사자 대상 사업 안내, 정책교육 참가(필수)
3월~12월	- 연 1회 보호자 대상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참가(필수)
6~7월	- 우리 센터만의 안전수칙(행동강령) 만들기(아크릴판으로 제작)
상시	- 안전한 채용 : 채용공고문 올릴 시 작성사항 : 범죄경력조회 및 평판조회(동의서 함께 제공)
매월	- 센터 내 정기 회의 시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내용 삽입 - 회의록 작성 후 매월 말 제출(월 1회)



## 2022년 사업 운영 내용(3~12월 사업 진행)

일	내 용
상시	- 유관기관, 외부강사 대상 교육 진행 및 서약서 서명
연 1회	- 아동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한 프로그램 만들기 - 외부/센터내 새로운 프로그램 시 위험요인 평가 자체 실시
상시	- 아동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마련 (카페, 블로그 관리, 사진/영상사용, 서류 잠금 등)
7월/12월	- 중간/ 결과보고서 작성
분기별	- 담당자 수당(5만원) 및 기관운영비(10만원) 제공



## 사업 세부 사항

# 인식/예방 - 1. 담당관(CPS) 지정



담당관이란?  
기관의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을 관리, 감독하고  
보완, 발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센터마다 1명씩 지정)

# 인식/예방 - 2. 안전수칙(행동강령) 수립, 게시(아크릴판 무료 제공)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부적인 약속”

## 안전수칙(행동강령) 만들기





##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 기본원칙

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며 아동 참여를 통해 아동권리를 실현합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아동의 위해와 관련된 모든 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며, 교직원,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모든 관련자, 협력기관에 의한 어떤 형태의 아동학대나 착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룰 것입니다.

### 행동강령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과 모든 관계자가 직무상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나 의심정황이 무시되지 않도록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은

-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와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 아이들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부모님 의견)
-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생, 청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모님 의견)
- 외모와 실력만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하고 격려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성별, 거주 지역,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하지 않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며 작은 변화와 발전에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아이들에게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활기차고 행복한 모델과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 ; 이메일 : c.....il.net



##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 기본원칙

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며 아동참여를 통해 아동권리를 실현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아동의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관련자, 협력기관에 의한 어떤 형태의 아동학대나 착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룰 것이다.

### 행동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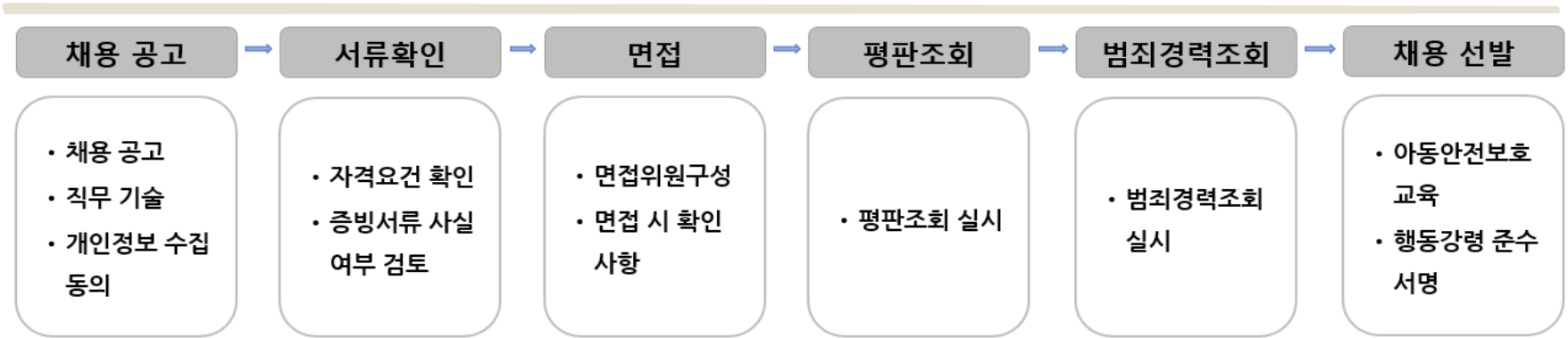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모든 관계자가 직무상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나 의심정황이 무시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해야한다.

#### 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은

- 부정적인 말과 행동, 몸짓 등을 취하지 않는다.
- 정서적 불안감을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ex)~하면 형님반, 동생반에 보낸다.
- 아동은 교실, 화장실, 복도 등 어디에서든 혼자두지 않는다.
- 아동의 생각과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고 경청한다.
- 아동에게 강요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아동의(상황,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편애하지 않는다.
- 아동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수용해 주고 “빨리, 빨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실·내외 활동 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동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서로 협력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전화 : ; 이메일 : .....nmail.net

# 인식/예방 - 3. 인사채용



- 채용공고문에 아동안전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 명시
- 직무기술서에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필수
- 자격요건 확인 및 증빙서류 검토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실여부)
- 평판조회 : 인사채용공고를 통해 안내하여 동의서 작성, 질문예시 매뉴얼 참조
- 범죄경력조회 실시
- 선발 및 아동안전보호교육 실시(아동안전보호 이행확약서 서명 후 제출)



## [직무기술 예시]

### 4. 주요업무 : 회계 및 사례관리

※ 상기 업무는 아동과 정기적으로 대면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채용면접 절차에 이에 관한 이력과 경험을 묻는 질문 및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에 따라 채용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1) 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를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 2) 면접 해당자는 우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3) 면접 후 채용예정자는 경력사유조화와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범죄경력조화를 진행한 후 경력사유가 없을 시 최종 채용이 진행됩니다.
- 4) 구암지역아동센터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입사 후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행을 위해 이행확약서 및 평판조화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새움지역아동센터 채용 공고

### 평판조외 실시 동의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평판조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판조외는 지원자님께서 지정된 추천자 및 지정하지 않은 평판조외 가능자를 통해 진행됩니다.

평판조외 시 취득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오직 채용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조외 내용: 업무능력, 성실성, 커뮤니케이션, 조직 융화력, 인성, 윤리와 관련된 상벌 내역 등

평판조외 실시에 동의한 경우, 평판조외 의뢰가 가능한 추천자(3명)를 아래 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평판조외 의뢰 가능자 ]

소속	성명	직명(직책)	본인과외 관계	연락처

본인은 세이브더칠드런의 평판조외 실시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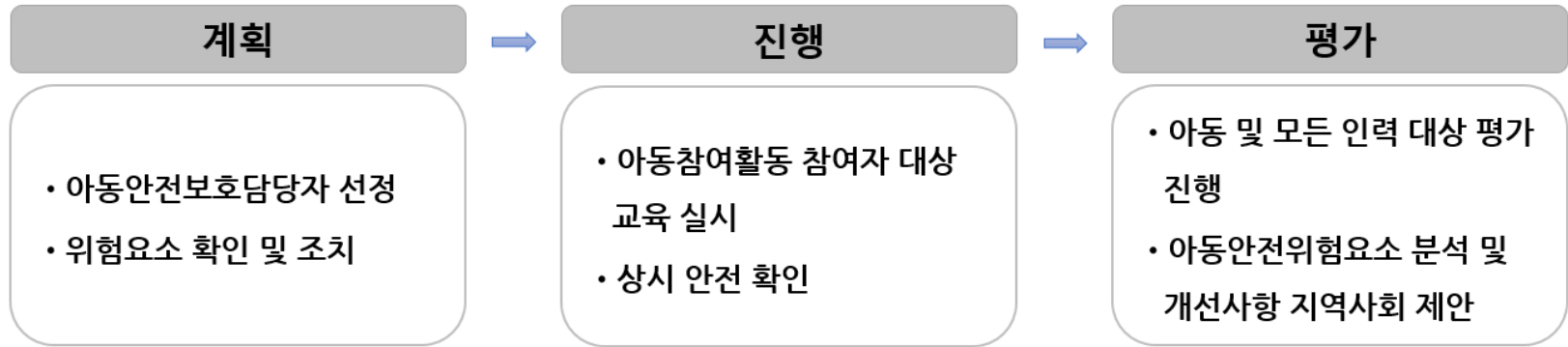
본인은 상기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에 대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세이브더칠드런 귀중

## 인식/예방 -4. 아동참여활동(아동대상 교육, 위험요인 평가)



### [계획단계]

- ▣ 사업 담당자와 별도로 아동참여활동 전반 총괄하는 아동안전보호담당자 선정
- ▣ 사전답사를 통해 아동참여 행사 사전답사 현장점검표 확인 후 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대응계획 점검표 작성

### [진행단계]

- ▣ 아동참여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교육실시 (필수)
- ▣ 상시 안전확인

### [평가단계]

- ▣ 참여한 모든 관계자 대상 평가 실시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사항 논의



## 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대응계획 점검표

행사/ 활동명: \_\_\_\_\_

날짜: 표참고 \_\_\_\_\_

• 위험요인 평가는 각 활동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이 누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지 분석하고 기존에 수집된 활동 내용으로 대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위험의 수준을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수립된 활동 내용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점검하여 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행사나 활동 진행 시 예상 가능한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함.

• 점검확인인 파악된 위험요인과 조치계획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자 혹은 관련부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임.

활동명	위험요인	위험대상 (아동 등)	대처방안	위험도 (상/중/하)	조치계획	점검확인
쿠비데이 (8월 18일)	2층에 준비되어 있는 간식과 매표소를 이용할 때 영아의 경우 계단이용에 대한 위험성	아동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간식 등을 손에 들지 않고 교사가 옮길 수 있도록 함	하	교사를 비롯하여 실습생의 도움을 받아서 영아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함 간식은 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동하기로 함	-
찜질방데이 (9월 15일)	아이스방에 얼음물을 만들었을 때 바닥이 미끄럽고 딱딱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	아동	바다에 폭신한 매트 준비하여서 미끄럼 방지 및 부딪혔을 때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중	영유아에게 안전지도를 하고 난 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돛자리매트를 충분히 준비하여서 팔걸 아래에 설치하기로 함	-
수목원견학 (11월 11일)	국화 등 꽃, 풀이 많은 관계로 벌 등 벌레에 물릴 수 있는 위험	아동, 교사	벌레퇴치제 사용	중	영유아 및 교사들도 벌레 퇴치제(부착용, 분사형)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프리마켓 (11월 11일)	전동자동차 코너에 영유아들이 조작 미숙으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아동	조작방법을 도와주고 공간확보를 해줌	중	교사 및 자원봉사자(부모님)가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원을 제한하여 공간을 확보해서 놀이 할 수 있도록 함	-
파자마데이 (12월 4일)	취침 할 때 문단속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부분	아동, 교사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사배치를 적절히 하여서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함	상	유아들의 수면 습관도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침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정비 등 무엇보다 문단속이 철저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 인식/예방 - 5. 협력기관관리(계약내용삽입, 교육)

※ 협력기관의 범위 : 지자체, 경찰서, 학교, 복지관, 심리치료센터, 급식업체, 드림스타트, 보안업체 등

## [업무협약체결]

- 협약서 및 계약서에 아동안전보호규정 준수 의무 작성
-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

## [협력기관 대상 아동안전보호교육 진행]

- 협약체결시 기관의 아동안전보호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이행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와 함께 첨부
- 협력기관 소속 직원이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교육자료를 제공

# 인식/예방 - 6. 개인정보관리

## [미디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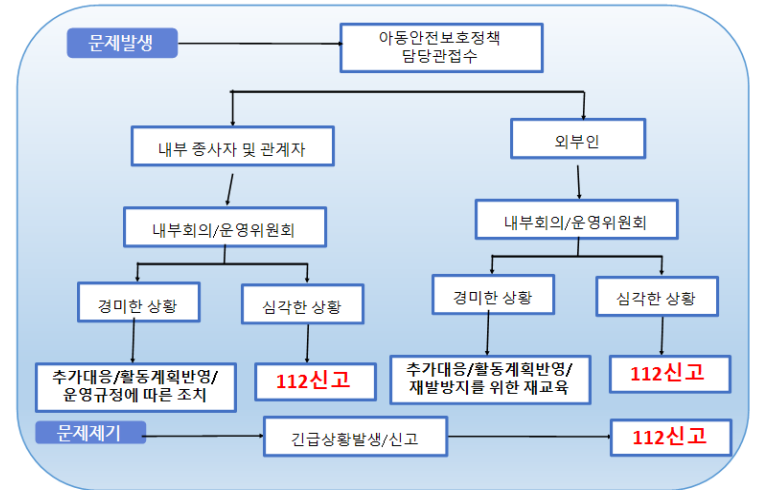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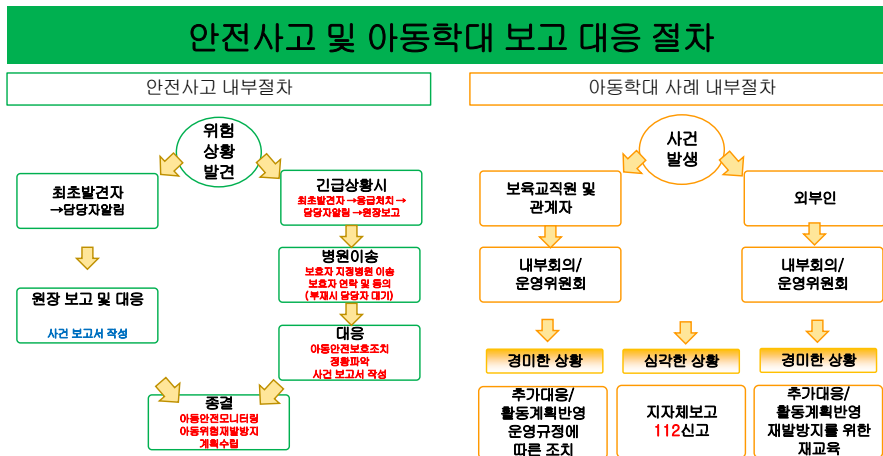
- 미디어 업체 관계자들에게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을 안내하고, 서명 진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아래내용을 명시후 서명  
(개인정보 사용 목적 / 아동의 개인정보 미디어 노출 범위)

## [SNS]

- 사전동의 : 날인된 동의서 및 사본을 보관하며 보안상 우려나 법적 제약 유무를 확인
- 사용목적에 대한 활용 : 기관 공식 SNS를 활용하며 모든 사전동의절차를 준수
- 비밀보장 : 개인 SNS를 통해 아동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 공유하지 않음.
- 위치정보 : 지역정보 공개로 인해 아동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
- 정보노출 : 아동의 정보노출은 최소화 해야하며 사진촬영 시 기관 공식 기기를 사용  
개인휴대폰으로 아동사진을 촬영할 경우 기관 PC로 옮긴 후 휴대폰 사진은 바로 삭제!

# 보고/대응 - 7. 아동안전보호 보고대응체계 마련

- 아동위험 발생 시 우리 기관 내부 대응 절차 마련하여 신속하게 처리 진행
- 보고 대응 체계에 따라 아동안전보호규정 위반 또는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 진행
- 내부회의 진행 및 사고보고서 작성 등 문서화 실시
- 아동안전보호위원회(운영위원회)를 위촉하고 및 필요 상황에 사례회의 진행



## 2022년 1차년도 참여기관 체크리스트

- 2차년도는 특강, 스터디등 제공드리는 사항에 자유롭게 참여

구분	업무	수행여부
담당자 지정	업무매뉴얼 숙지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수립	종사자 대상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 이수(필수)	
	센터내 보호자 대상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이수(필수)	
	우리기관 행동강령 수립(필수)	
	행동강령 기관 내 게시물 부착	
인사채용 (상시)	채용시 공고문 아동안전보호관련 책무 명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확인	
	평판조회, 범죄경력조회 실시	
	신규 종사자 대상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교육 아동안전보호 이행확약서 서명	
아동참여프로그램 (상시)	아동대상 아동참여워크숍 실시(필수)	
	아동참여프로그램 장소 사전답사 진행	
	사전답사 후 위험요인평가 및 대응계획표 작성	
	사전답사 후 아동대상 안전보호교육 실시(안전에 대한 내용 전달)	
	참여프로그램 관련자(자원봉사자 등) 대상 아동안전보호교육 자원봉사자, 외부인력 대상 아동안전보호이행확약서 서명	
협력기관 관리 (상시)	협약서 아동안전보호규정 준수조항 작성	
	협력기관 대상 아동안전보호규정 안내 및 교육	
	협약 체결시 이행확약서 서명	
개인정보보호관리 (상시)	미디어활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확인 * 해당 양식은 기관 내부 운영에 맞게 수정 가능	
아동안전보호 위반시 보고대응체계 (체계마련후 상시)	우리기관 아동안전보호 보고/대응체계마련(필수)	
	아동안전보호규정 위반 또는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	
	사고보고서 작성 및 내부회의	
	아동안전보호위원회(운영위원회)소집 _센터장, 아동안전보호담당자 필수/ 필요시 참석자 추가 가능	
아동안전보호 이행점검	월 1회 아동안전보호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제출(필수)	
	중간/ 결과 평가서 작성(필수)	

우리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 성적학대를 포함한  
흑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9조 -

“Save the Children Safe for Children.”